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7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허영
안도걸 · 한병도 · 이춘석
안호영 · 박희승 · 이성운
문대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킨 판교 데
이터센터 화재 당시 정부는 카카오톡에 다중화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러나 정작 정부는 2023년 말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에 이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
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70여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되
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임.

비록 정부가 지난 2024년 7월 현행법 시행령 별표1의3에 ‘「전자정

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재난, 안전관리 대책 및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나. 정보시스템설비의 연계 운영 및 정보시스템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우회 정보시스템 경로의 확보

라.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	나. ----- ----- ----- ----- ----- ----- ----- ----- ----- ----- ----- -----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2. ~ 13. (생략)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전자정보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 13.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이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대책에 관한 사항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3.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등

	<u>으로 인하여 정부가 운영하는</u> <u>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u> <u>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u> <u>각 목의 사항</u> <u>가.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u> <u>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u> <u>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u> <u>기술적 보호조치</u> <u>나. 정보시스템설비의 연계</u> <u>운영 및 정보시스템서비스</u> <u>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u> <u>의 구성</u> <u>다. 우회 정보시스템 경로의</u> <u>확보</u> <u>라.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u>
--	--